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-178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8(2007.06.07.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-104(2012.07.19.)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-170(2012.11.26.)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제2017-164호, 제2018-10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2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7일

성 북 구 청 장

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4-87번지 일대 (28,215.50m²)
4. 사업시행자 : 디에스디삼호(주)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, 14층 마라톤빌딩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6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9년 11월 7일
7. 주요 변경 사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시행자	(주)디엔지파트너스	디에스디삼호(주)	주민총회 의결
자치규약	시행자(주소), 용어 수정 등		주민총회 의결

8. 관계도서 : 생략 《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02-2241-2855)에 비치》